#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767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개호・박지원・어기구

위성곤 · 조인철 · 김병기

전재수 · 서삼석 · 박지혜

이언주 · 차규근 · 김현정

박수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거래의 선진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 도매시 장·공판장의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간소한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화훼 전자거래소(화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 2. 화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 3. 화훼의 품목·원산지·가격 및 바코드 등 전자인식표의 표시 및 관리
-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 · 관리
- 5. 화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화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 방법 등 화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 ④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은 유통질서 유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①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 소상 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 여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화훼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하여 화훼 소상공인의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3.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경매·도매·유통·소비 등에 관한 사항
  - 4. 화훼장식업 종사자 육성 및 화훼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와 제13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훼산업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

을 요구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2(거래의 선진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
	도매시장 · 공판장의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간소한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화훼 전자거래소(화훼 전자거
	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
	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u>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u>
	2. 화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
	<u>리</u>
	3. 화훼의 품목·원산지·가격
	및 바코드 등 전자인식표의 표
	시 및 관리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
	의 운영ㆍ관리
	5. 화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

보 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화훼 전자거래에 필 요한 업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 료 및 결제 방법 등 화훼 전자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은 유통질서 유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하여운영한다.

제11조의2(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①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소성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시책의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 을 심의한다.
- 1.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화훼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하여 화훼 소상공인의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3.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경매·도매·유통·소비 등에 관한 사항
- 4. 화훼장식업 종사자 육성 및 화훼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와 제13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훼산업육성 및 화 훼문화 진흥을 위해서 위원회 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밖의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

 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